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456호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29일
발 의 자 : 정순희 의원
찬 성 자 : 이인락, 최재란, 심광식, 이재식, 임정옥 의원
(6 명)

1. 제안이유

최근 보조금 유용문제가 불거지고 세금이 낭비된다는 비판여론이 증가하는 있음. 때문에 향후 양천구의 보조금이 지원될 시설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적용함(안 제3조).

다.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그리고 설치와 관리, 철거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다음 해 보조금 지원에 반영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
제32조의8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라. 기타

1) 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0. . . ~ 2020. .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지판 설치 대상 보조사업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표지판을 설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 동안 설치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표지판의 관리)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 후 장소를 이동하여 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등 표지판 관리가 부실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제12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관리 및 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제13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

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생 략〉
②〈생 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생 략〉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제17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